

4인이하 사업장에 대한 근로조건 실태조사 분석

1997. 6. 30

俞 京 濬

(韓國勞動研究院 研究委員)

I. 일 반 현 황

1. 근로자수 및 연령

- 1,700개 사업장의 평균근로자수는 2.3명, 평균연령은 31.8세(31세 10개월)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남자를 평균 1.12명, 여자를 1.17명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1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1995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는 근로자의 평균연령은 35.1세, 남자는 36.7세, 여자는 31.0세로 나타남.

2. 근속연수

- 1,700개 사업장에서 20년이하로 평균 1.66년(1년 8개월) 근속하고 있음.
- 1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1995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는 평균근속연수가 5.6년(남자 6.3년, 여자 3.8년)으로 나타남.

3. 업 종

- 조사사업장의 업종별 분포는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이 전체의 29.1%로 가장 높고, 숙박·음식업이 25.3%, 제조업 14.4%,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이 13.1%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1> 조사대상 사업체의 업종별 분포도

	빈도수	비율
제조업	243	14.4
건설업	54	3.2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493	29.1
숙박·음식	429	25.3
운수·창고	24	1.4
금융·보험	7	0.4
부동산	69	4.1
교육서비스	90	5.3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62	3.7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222	13.1
합 계	1,693	100

II. 근로조건

가. 근로계약

1. 근로자의 취업경로

- 4인 이하 사업장에 취업하는 근로자는 주로 친척·친구 등 아는 사람을 통해서 취직하거나(70%), 구인광고를 보고 취업하고 있고(17%), 공공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13%)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2> 근로자의 취업경로(근로자 답변)

	빈도수	비율
직업소개소를 통하여	74	4.4
구인광고를 보고	294	17.3
친척·친구 등 아는 사람을 통해서	1,198	70.0
직업안정기관(노동사무소 직업안정과 등)	7	0.4
기타	127	7.5
합 계	1,700	100

2. 근로계약의 체결형태

- 근로계약시 근로자와 사업주는 서면계약을 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5%정도)이고 대부분이 구두로 취업계약을 하고 있음(95%).

<표 3> 근로계약의 체결형태

	구두계약		서면계약		합 계	
	빈도수	비율	빈도수	비율	빈도수	비율
사업주 응답	1,606	94.7	89	5.3	1,695	100
근로자 응답	1,610	94.7	89	5.2	1,699	100

3. 근로계약의 체결사항(복수응답)

- 4인이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의 체결사항은 임금수준 및 지급시기, 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에 대한 사항만 체결하고 있으며, 이 경우도 체결빈도는 임금수준 및 지급시기가 34%, 근로시간이 29%, 휴일 및 휴가가 25%로 4인이하 전체사업장의 1/3이하에 불과함.

<표 4> 근로계약의 체결사항(복수응답)

	사업주답변		근로자답변	
	빈도수	비율	빈도수	비율
계약기간	149	3.1	129	2.7
급여수준 및 지급시기	1,649	34.1	1,635	34.4
퇴직금	296	6.1	314	6.6
근로시간	1,373	28.4	1,364	28.7
휴일 및 휴가	1,235	25.6	1,194	25.1
재해발생시 보상	71	1.5	67	1.4
징계 및 해고사유	45	0.9	31	0.7
기타	15	0.3	19	0.4
합 계	4,833	100.0	4,753	100.0

나. 임금

1. 임금수준(잔업수당, 상여금포함)

- 4인이하 사업장의 임금수준은 100만원미만을 받는 근로자가 전체의 69%이며 150만원 이상을 받는 근로자는 전체의 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10인이상 전사업장 평균임금(1996년 매월노동통계기준) 1,357,501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임금수준의 차이는 기본급이나 정액급여상의 차이는 별로 나지 않으나, 상여금 등 특별급여의 측면에서 상당히 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이철수·유경준, 4인이하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확대에 관한 연구, 1997)

<표 5> 임금수준(총액)

	빈도	비율
50만원 미만	110	6.5
50~75만원 미만	503	29.6
75~100만원 미만	550	32.4
100~125만원 미만	352	20.7
125~150만원 미만	115	6.8
150만원이상	67	3.9
합 계	1,697	100.0

2. 임금지급일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 임금지불일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는 5%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 95%는 고정된 임금지불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임금체불의 원인이 되고 있음.

<표 6> 고정임금지급일의 유무

	사업주답변		근로자답변	
	빈도수	비율	빈도수	비율
없다	103	6.1	84	5.0
있다	1,591	93.9	1,610	95.5
합계	1,694	100.0	1,694	100.0

3. 임금지불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 임금지급일이 지켜지지 않고 지급일 이후에 임금을 받은(지급한) 경우는?

- 4인이하 사업장에서 사업주의 19%(근로자 응답의 20%)가 임금체불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7> 임금체불의 유무

	사업주답변		근로자답변	
	빈도수	비율	빈도수	비율
없다	1,286	81.0	1,084	79.6
있다	301	19.0	278	20.4
합계	1,587	100.0	1,362	100.0

4. 임금을 밀려서 받은(준) 경우 1년에 몇회 정도나 밀렸는지?

- 임금체불의 경우 1년간 그 빈도는 2-3회가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1회가 약 28%로 나타나고 있음.

<표 8> 임금체불의 경우 1년간 그 회수는?

	사업주답변		근로자답변	
	빈도수	비율	빈도수	비율
1회	89	28.1	85	27.2
2-3회	173	54.6	177	56.7
4-5회	33	0.4	29	9.3
6회이상	33	6.9	21	6.7
합 계	317	100.0	321	100.0

5. 임금을 밀려서 준 경우 그 이유는(사업주 답변)?

-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그 이유에 대하여 판매부진이 52.5%, 도급업체 대금 결제지연이 28.1%, 납기지연이 4.5% 로 나타나고 있음.

<표 9> 임금체불의 이유(사업주 답변)

	빈도	비율
도급업체의 대금결제 지연	87	28.1
납기지연	14	4.5
판매부진	163	52.5
기타	46	14.8
합 계	310	100.0

6. 임금을 밀려 받은 적이 있다면 그 기간은(근로자 답변)?

- 임금체불의 경우 그 기간은 1주에서 2주이내가 48%로 가장 높고, 1주이내가 25%, 3주이상 4주이내가 21%, 2주이상 3주이내가 5%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10> 임금체불의 경우 그 기간은?(근로자 답변)

	빈도	비율
1주이내	116	24.6
1주이상 2주이내	226	48.0
2주이상 3주이내	24	5.1
3주이상 4주이내	100	21.2
4주이상	5	1.1
합 계	471	100

7. 임금체불의 경우 근로자의 대응은(근로자응답, 복수응답)?

- 임금체불을 경험한 근로자의 대부분은(80%) 그냥 기다린다고 답변하고 있으며, 개인적으로 또는 동료와 함께 항의하여 받은 경우는 13.7%로 나타났으며, 노동부나 노동단체의 도움을 받거나(4.8%), 법원에 청구하는 경우(1.3%)는 매

우 적은 것으로 나타남.

<표 11> 임금체불의 경우 근로자의 대응(근로자 답변)

	빈도	비율
그냥 기다린다	488	80.3
개인적으로 또는 동료들과 항의하여 받아냄	83	13.7
노동부에 신고하거나 노동단체 등의 도움으로 받아냄	29	4.8
법원에 청구(소액심판권청구 등)	18	1.3
합 계	471	100

8. 퇴직금제도

- 4인이하 사업장에서 퇴직금제도가 있는 사업장은 전체의 1/4정도이며 나머지 1/3은 퇴직금제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12> 퇴직금제도의 유무

	사용주답변		근로자답변	
	빈도수	비율	빈도수	비율
없다	1,275	75.8	1,314	77.8
있다	406	24.2	376	22.2
합계	1,681	100.0	1,690	100.0

9. 퇴직금제도가 있다면 어떤식으로 계산하는가?

- 4인이하 사업장의 퇴직금계산 방법은 전체의 절반 이상(56%)이 1년근무당 평균임금의 1개월이상을 지급하고 있으며, 정해진 기준없이 사업주가 임의 지급하는 경우가 전체의 1/3로 나타나고 있으며, 1년근무당 평균임금의 1개월미만

을 주는 사업장도 전체의 10% 정도로 나타나고 있음.

<표 13> 퇴직금의 계산 방법

	사업주답변		근로자답변	
	빈도수	비율	빈도수	비율
1년근무당 평균임금 1개월 이상	266	54.4	250	57.6
1년근무당 평균임금 1개월 미만	55	11.2	38	8.8
특별히 정해진 기준없이 사업주 임의	168	34.4	146	33.6
합 계	489	100.0	434	100.0

다. 근로시간

1. 1주일 기준 정상근로시간은?

- 4인이하 사업장의 주당 정상 근무시간은 48시간이 50% 정도, 44시간에서 48시간 미만이 25%, 44시간이 10%, 44시간 미만이 12% 정도로 나타나고 있음.
- 10인이상 전사업장의 경우(1995년, 임금기준조사보고서)는 근로자의 1달 평균 근로시간이 185. 5시간으로 나타남.

<표 14> 주당 정상근무시간

	사업주답변		근로자답변	
	빈도수	비율	빈도수	비율
44시간 미만	217	12.9	202	11.9
44시간	182	10.8	176	10.4
44시간초과 48시간 이하	429	25.5	419	24.7
48시간 이상	853	50.7	897	53.0
합 계	1,681	100.0	1,694	100.0

2. 1주일 평균 잔업일수 및 잔업시간은?

- 4인이하 전체 사업장의 주당 평균 잔업일수는 2.3(근로자 응답은 2.5)일, 평균 잔업시간은 5.9(근로자 응답은 6.5)시간으로 나타남.

<표 15> 주당 평균 초과근로일수 및 초과근로시간

	사업주 응답(1,700개소)	근로자 응답(1,701개소)
잔업일수	2.3일	2.5일
잔업시간	5.9시간	6.5시간

- 1주당 1시간 이상의 잔업시간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만을 대상으로 보면, 주당 평균 잔업일수는 994개 사업장에서 3.8(근로자 응답은 1,051사업장에서 3.9)일, 평균 잔업시간은 10.1(근로자 응답은 1,051사업장에서 10.5)시간으로 나타남.

3. 시간외근로를 할 경우 수당(가산임금)은 얼마나 지급하고(받고) 있는가?

- 4인이하 사업장의 경우 초과근로수당에 대한 할증률을 법정기준수당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전체의 약 10%, 법정기준 미만의 경우는 2%, 일정한 기준 없이 사업주가 적당히 주는 경우는 전체의 약 18%로 나타나고 있으며,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전체의 70%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16> 초과 근로수당의 할증률

	사업주답변		근로자답변	
	빈도수	비율	빈도수	비율
법정기준수당이상(통상임금 1.5배이상)	127	10.3	116	9.1
법정기준 수당 미만	22	1.8	18	1.4
일정한 기준없이 적당히	235	19.0	211	16.5
별도로 지급하고(받는) 것이 없다	850	68.9	933	73.0
합 계	1,234	100.0	1,278	100.0

4. 일주일에 평균 몇일의 야간근로(22:00-익일 06:00)가 있는가?

- 4인이하 전체 사업장의 주당 평균 잔업일수는 0.4(근로자 응답도 0.4)일, 평균 잔업시간은 1.1(근로자 응답은 1.0)시간으로 나타남.

<표 17> 주당 평균 야간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사업주 응답(1,700개소)	근로자 응답(1,701개소)
야간 근로일수	0.4일	0.4일
야간 근로시간	1.1시간	1.0시간

- 1주당 1시간 이상의 야간근로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만을 대상으로 보면, 주당 평균 야간근로일수는 181개 사업장에서 3.9(근로자 응답은 183사업장에서 3.7)

일, 평균 잔업시간은 10.1(근로자 응답은 183사업장에서 9.7)시간으로 나타남.

5. 야간근로를 할 경우 수당(가산임금)은 얼마나 지급하고(받고) 있는가?

- 4인이하 사업장의 경우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할증률을 법정기준수당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전체의 약 9%(근로자응답은 6%), 법정기준 미만의 경우는 1%, 일정한 기준없이 사업주가 적당히 주는 경우는 전체의 약 20%(근로자응답은 17%)로 나타나고 있으며,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전체의 70%(근로자응답은 77%)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18> 야간 근로수당의 할증률

	사업주답변		근로자답변	
	빈도수	비율	빈도수	비율
법정기준수당이상(통상임금 1.5배이상)	35	9.3	24	6.1
법정기준 수당 미만	3	0.8	3	0.8
일정한 기준없이 적당히	74	19.7	65	16.5
별도로 지급하고(받는) 것이 없다	264	70.2	303	76.7
합 계	376	100.0	395	100.0

라. 휴일·휴가·휴게

1. 귀하의 사업장은 1주 1일이상을 주휴일로 하고 있습니까?

- 4인이하 사업장의 경우 1주일에 1시간이상 주휴일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은 전체의 70%정도이며 나머지 30%는 주휴일이 없는 것으로 파악됨.

<표 19> 주휴일의 실시 유무

	사용주답변		근로자답변	
	빈도수	비율	빈도수	비율
예	1,189	70.2	1,181	70.9
아니요	504	29.8	508	30.1
합계	1,693	100.0	1,689	100.0

2. 주휴제도가 있는 경우 유급으로 처리하고 있습니까?

- 주휴제도가 있는 경우 주휴제도를 유급으로 처리하는 사업장은 전체의 80%, 유급으로 처리하는 사업장은 20%로 나타남.

<표 20> 주휴제도의 유급유무

	사용주답변		근로자답변	
	빈도수	비율	빈도수	비율
그렇다	1,121	81.9	1,084	79.6
아니다	247	18.1	278	20.4
합 계	1,368	100.0	1,362	100.0

3. 주휴제도가 있다면, 귀하는 한달 평균 몇일이나 주휴일에 근로합니까?

- 주휴제도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한달 평균 0.6(사업주 및 근로자 같은 응답)일의 주휴를 받고 있음.

4. 주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수당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 4인이하 사업장에 있어, 근로자가 주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그 수당을 법정기준수당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전체의 약 12%(근로자응답은 11%), 법정기준 미만의 경우는 2.4%(근로자 응답은 2.6%), 일정한 기준 없이 사업주가 적당히 주는 경우는 전체의 약 20%(근로자응답도 20%)로 나타나고 있으며,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전체의 65%(근로자응답은 67%)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21> 주휴일의 근로수당

	사업주답변		근로자답변	
	빈도수	비율	빈도수	비율
법정기준수당이상(통상임금 1.5배이상)	104	12.1	86	11.1
법정기준 수당 미만	21	2.4	20	2.6
일정한 기준없이 적당히	174	20.2	152	19.6
별도로 지급하고(받는) 것이 없다	564	65.4	518	66.8
합 계	863	100.0	776	100.0

5. 월차를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 4인이하 사업장에 있어 대부분의 사업장이 월차를 실시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90%), 무급으로 실시하는 사업장이 전체의 2%, 월차를 지급하는 곳이 2%, 월차를 받거나 수당의 지급을 근로자가 선택하도록 하는 곳이 7%로 나타남.

<표 22> 월차의 실시유무

	사업주답변		근로자답변	
	빈도수	비율	빈도수	비율
실시하지 않는다	1,485	89.0	1,512	90.3
일을 하도록 하는 대신 월차를 지급	30	1.8	27	1.6
월차사용이나 수당지급을 근로자가 선택	121	7.2	110	6.6
무급으로 실시	33	2.0	25	1.5
합 계	1,669	100.0	1,674	100.0

6. 연차휴가를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 4인이하 사업장에 있어 대부분의 사업장이 연차를 실시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70%), 무급으로 실시하는 사업장이 전체의 3%, 월차를 지급하는 곳이 1%, 월차를 받거나 수당의 지급을 근로자가 선택하도록 하는 곳이 26%로 나타남.

<표 23> 연차의 실시 유무

	사업주답변		근로자답변	
	빈도수	비율	빈도수	비율
실시하지 않는다	1,143	68.9	1,179	71.2
일을 하도록 하는 대신 연차를 지급	12	0.7	12	0.7
연차사용이나 수당지급을 근로자가 선택	443	26.7	411	24.8
무급으로 실시	62	3.7	55	3.3
합 계	1,660	100.0	1,657	100.0

7. 연차휴가를 실시하는 경우 그 기간은?

- 연차휴가의 경우 4인이하 사업장의 17%가 법정기준이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으며, 83%는 법정기준미만으로 실시하고 있음.

<표 24> 연차휴가의 기간

	사업주답변		근로자답변	
	빈도수	비율	빈도수	비율
법정기준이상(1년개근시 10일, 9월이상 출근시8일이상)	98	17.4	95	17.6
법정기준미만	464	82.6	446	82.4
합 계	562	100.0	541	100.0

8. 근로시간중 휴게시간이 있습니까?

- 근로시간중 휴게시간은 4인이하 사업장의 70%가 정해진 바가 없이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고 있으며, 법정기준이상을 주는 사업장이 전체의 20% 정도이고, 나머지 10%는 휴게시간이 없거나 법정기준 미만을 휴게시간으로 주고 있음.

<표 25> 휴게시간의 유무 및 정도

	사업주답변		근로자답변	
	빈도수	비율	빈도수	비율
없다	106	6.3	144	8.6
법정기준 이상*	357	21.4	314	18.7
법정기준미만	34	2.0	44	2.6
정해진 바가 없이 근로자가 알아서 쉽	1,175	70.3	1,173	70.0
합계	1,672	100.0	1,657	100.0

주*) 근로시간이 4시간이상일 경우 30분이상, 근로시간이 8시간일 경우 1시간이상

마. 해고

1. 어떠한 경우에 해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 근로자의 해고가 발생하는 조건은 4인이하 사업장의 절반이상이 근로자의 의

사에 반하여 해고되지 않는다고 답변하고 있으며, 사업주가 임의로 해고할 수 있다고 답한 경우는 11.4%(근로자 응답은 19%)이고,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나 회사의 사정이 나쁠 때라 답한 경우는 전체의 34%(근로자의 응답은 27%)로 나타남.

<표 26> 해고의 조건

	사업주답변		근로자답변	
	빈도수	비율	빈도수	비율
사용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가능	187	11.4	311	18.9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나 회사 사정이 나쁠때	564	34.3	446	27.1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해고되지 않음	895	54.4	886	53.9
합 계	1,646	100.0	1,643	100.0

2. 해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해고의 절차는?

- 해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해고의 절차는 해고의 수당이나 예고없이 즉시해고가 이루어진다고 답변한 사업장이 사업주의 경우 전체의 45%, 근로자의 경우 56%로 답하고 있으며, 30일이하의 해고예고기간이 있다고 답한 것은 사용자의 36%, 근로자의 30%이고, 30일이상의 해고예고가 있는 경우는 사용자 답변의 14%, 근로자 답변의 9%를 차지하고 있고, 즉시해고가 이루어지며 해고수당이 지급되는 경우는 사업주답변과 근로자 답변의 5%를 차지하고 있음.

<표 27> 해고의 절차

	사업주답변		근로자답변	
	빈도수	비율	빈도수	비율
해고수당이나 예고없이 즉시 해고	398	45.4	517	55.8
즉시 해고가 이루어지나 해고수당은 지급	40	4.6	48	5.2
30일이하에 해고예고	316	36.1	277	29.9
30일이상의 해고예고	122	13.9	85	9.2
합 계	876	100.0	927	100.0

마. 모성보호 및 연소자 보호(여성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만 질문)

1. 생리휴가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 생리휴가의 경우 4인이하 사업장의 92%가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실시하지만 쉬지 않고 수당으로 지급하는 곳이 전체의 2%, 무급으로 처리하는 곳이 전체의 2%, 휴가의 사용이나 수당의 지급을 근로자가 선택하는 경우가 전체의 5%로 나타남.

<표 28> 생리휴가의 유무 및 수당

	사업주답변		근로자답변	
	빈도수	비율	빈도수	비율
실시하지 않는다	1,197	91.7	1,192	93.1
실시하지만 쉬지 않고 수당으로 지급	19	1.5	14	1.1
생리휴가 사용이나 수당을 근로자가 선택	72	5.5	54	4.2
무급으로 처리	18	1.4	20	1.6
합 계	1,306	100.0	1,280	100.0

2. 산전후휴가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 산전후휴가의 경우 4인이하 사업장의 86%가 특별히 정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임신하면 출산하거나 회사를 휴직하는 곳이 전체의 9%, 무급 또는 병가로 처리하는 곳이 전체의 3%,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가 전체의 3%로 나타남.

<표 29> 산전후휴가의 실시 유무

	사업주답변		근로자답변	
	빈도수	비율	빈도수	비율
임신하거나 출산하면 회사를 사직	104	8.3	120	9.7
무급휴가 또는 병가로 처리	34	2.7	26	2.1
유급휴가를 준다	37	2.9	32	2.6
특별하게 정해진 것이 없다.	1,081	86.1	1,062	85.6
합 계	1,256	100.0	1,240	1,240

3. 산전후휴가가 유급인 경우 몇일입니까?

- 산전후휴가의 경우 4인이하 사업장의 30%가 법정기준이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으며, 70%는 법정기준미만으로 실시하고 있음.

<표 30> 산전후휴가의 기간

	사업주답변		근로자답변	
	빈도수	비율	빈도수	비율
법정기준이상(산후 30일이상 포함 60일 이상)	74	32.7	63	31.5
법정기준미만	152	67.3	137	68.5
합 계	226	100.0	200	100.0

4. 연소자(18세 미만) 근로자가 있습니까?(사업주답변)

- 4인이하 사업장중 연소자를 채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전체의 1%에 불과하고 나머지 99%는 채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표 31> 연소자채용의 유무

	빈도수	비율
있다	14	1.0
없다	1,398	99.0
합계	1,412	100.0

5. 연소자를 채용한 경우 채용시 필요한 서류를 받았습니까?(사업주답변)

- 연소자를 채용하는 경우 필요서류를 받은 사업주는 전체의 22%, 그렇지 않은 사업주는 전체의 88%임.

<표 32> 연소자채용시 필요서류 작성유무

	빈도수	비율
받았다	18	21.7
안 받았다	65	78.3
합 계	83	100.0

바. 산업안전 및 재해

1. 작업장내 각사항이 근로자의 건강에 미치는 나쁜 영향에 대한 답변

1-1. 작업장내에 발생하는 소음

<표 33-1> 작업장내 소음의 영향

	사용주답변		근로자답변	
	빈도수	비율	빈도수	비율
크다	54	3.3	82	5.1
그저 그렇다	180	11.1	191	11.8
적다	238	14.7	230	14.3
발생하지 않는다	1,144	70.8	1,109	68.8
합 계	1,616	100.0	1,612	100.0

1-2. 작업장 및 작업공구로 인한 진동

<표 33-2> 작업장내 진동의 영향

	사용주답변		근로자답변	
	빈도수	비율	빈도수	비율
크다	19	1.2	25	1.6
그저 그렇다	97	6.1	115	7.1
적다	177	11.0	165	10.2
발생하지 않는다	1,310	81.7	1,305	81.1
합 계	1,603	100.0	1,610	100.0

1-3. 작업장내 발생하는 먼지

<표 33-3> 작업장내 먼지의 영향

	사용주답변		근로자답변	
	빈도수	비율	빈도수	비율
크다	54	3.4	89	5.5
그저 그렇다	150	9.3	160	9.9
적다	282	17.5	257	15.9
발생하지 않는다	1,212	69.8	1,106	68.6
합 계	1,607	100.0	1,612	100.0

1-4. 작업중 발생하는 유해가스

<표 33-4> 작업장내 유해가스의 영향

	사용주답변		근로자답변	
	빈도수	비율	빈도수	비율
크다	2	0.1	13	0.8
그저 그렇다	35	2.2	42	2.6
적다	85	5.3	88	5.5
발생하지 않는다	1,473	92.4	1,455	91.1
합 계	1,595	100.0	1,598	100.0

1-5. 작업중 발생하는 중금속 중기(예: 도금작업 등)

<표 33-5> 작업장내 중금속 중기의 영향

	사용주답변		근로자답변	
	빈도수	비율	빈도수	비율
크다	1	0.1	3	0.2
그저 그렇다	10	0.6	23	1.5
적다	44	2.8	51	3.2
발생하지 않는다	1,529	96.5	1,504	95.1
합 계	1,584	100.0	1,581	100.0

1-6. 작업중 발생하는 유해광선(예: 용접시 자외선 등)

<표 33-6> 작업중 유해광선의 영향

	사용주답변		근로자답변	
	빈도수	비율	빈도수	비율
크다	5	0.3	13	0.8
그저 그렇다	30	1.9	45	2.8
적다	75	4.7	80	5.1
발생하지 않는다	1,470	93.0	1,445	91.3
합 계	1,580	100.0	1,583	100.0

1-7. 작업장내 조명수준

<표 33-7> 작업장내 조명수준의 영향

	사용주답변		근로자답변	
	빈도수	비율	빈도수	비율
크다	166	10.5	144	9.1
그저 그렇다	356	22.5	400	25.2
적다	178	11.2	188	11.9
발생하지 않는다	883	55.8	853	53.8
합 계	1,583	100.0	1,585	100.0

1-8. 작업중 취급하는 유기용제(예: 신나접착제페인트 등)

<표 33-8> 작업중 유기용제의 영향

	사용주답변		근로자답변	
	빈도수	비율	빈도수	비율
크다	9	0.6	14	0.9
그저 그렇다	38	2.4	43	2.7
적다	96	6.0	84	5.3
발생하지 않는다	1,445	91.0	1445	91.1
합 계	1,588	100.0	1,586	100.0

1-9. 무거운 물건 등의 취급중에 발생하는 요통

<표 33-9> 작업장중 요통

	사용주답변		근로자답변	
	빈도수	비율	빈도수	비율
크다	41	2.6	50	3.1
그저 그렇다	128	8.0	153	9.6
적다	195	12.2	211	13.2
발생하지 않는다	1,234	77.2	1,182	74.1
합 계	1,598	100.0	1,596	100.0

2.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건강진단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견해는?(사업주 답변)

- 4인이하 사업장의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한 정기적 건강진단에 대하여 필요하다는 견해가 전체의 48%, 필요없다는 견해가 전체의 24%이고, 그저 그렇다고 답한 경우는 28%로 나타남.

<표 34> 정기적 건강진단의 필요성(사업주답변)

	빈도수	비율
필요하다	809	48.2
그저 그렇다	473	28.2
필요없다	397	23.6
합 계	1,679	100.0

3. 최근 2년동안 직장에서 제공한 건강진단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근로자 답변)

- 최근 2년 사이에 건강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냐는 질문에 대하여 근로자의

17%만이 있다고 답을 했으며, 83%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

<표 35> 건강진단의 유무(근로자 답변)

	빈도수	비율
있다	283	16.8
없다	1,405	83.2
합계	1,688	100.0

4. 건강진단을 받은 적이 없다면 정기적 건강진단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는?
(근로자 답변)

- 건강진단을 받은 적이 없는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의 답변은 근로자의 64.7%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했으며, 필요없다는 견해가 9%, 그저 그렇다는 견해가 26%로 나타남.

<표 36> 건강진단의 필요성 유무(근로자 답변)

	빈도수	비율
필요하다	955	64.7
그저 그렇다	390	26.4
필요없다	131	8.9
합 계	1,476	100.0

5. 귀 사업장에 최근 1년간 재해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 최근 2년간 산업재해의 발생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98%는 발생한 적이 없다고 답변하였고 2%만이 발생하였다 답변.

<표 37> 산업재해의 발생유무

	사업주답변		근로자답변	
	빈도수	비율	빈도수	비율
없다	1,653	98.5	1,646	97.9
있다	26	1.5	36	2.1
합계	1,679	100.0	1,689	100.0

6. 재해 발생시 치료비를 어떻게 처리(재해 발생이 없는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앞으로 발생할 경우) 치료비의 처리에 대하여 사업주(근로자)의 견해는 회사의 부담이라 답한 경우는 59%(46%)로 사업주가 근로자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회사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부담이라 견해에 20.5%(15%), 근로자 본인의 부담에 대하여 6%(8%)로 답변했으며, 산재보험으로 처리한(하는) 경우는 5%(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37> 재해발생시 치료비의 처리

	사업주답변		근로자답변	
	빈도수	비율	빈도수	비율
근로자 본인 부담	99	6.2	97	7.8
회사에서 부담	935	58.5	574	46.0
회사와 근로자 공동부담	327	20.5	173	13.9
산재보험으로 처리	81	5.1	37	3.0
기 타	155	9.7	368	29.5
합 계	1,597	100.0	1,249	100.0

7. 재해발생시 치료기간중의 임금은 어떻게 처리?

- 재해발생기간중의 임금지급에 대하여 4인이하 사업장 전체 사업주(근로자)의 66%(74%)는 잘 모른다는 답을 하였고, 근로기준법이상을 지급하는 경우는 19%(13%), 근로기준법미만의 경우는 5%(6%)로 나타났으며, 지급하지 않는다는 답변도 10%(8%)에 이르고 있음.

<표 38> 재해발생기간중의 임금

	사용주답변		근로자답변	
	빈도수	비율	빈도수	비율
지급하지 않는다	156	9.7	106	7.7
근로기준법상의 기준 미만	82	5.1	79	5.7
근로기준법상의 기준 이상	309	19.2	179	13.0
잘 모르겠다	1,060	66.0	1,015	73.6
합 계	1,607	100.0	1,379	100.0

8. 재해발생후 치료종결시 장해보상은 어떻게(재해 발생이 없는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 재해발생기간중의 임금지급에 대하여 4인이하 사업장 전체 사업주(근로자)의 75%(83%)는 형편에 따라(잘 모른다)라는 답을 하였고, 근로기준법이상을 지급하는 경우는 13%(7%), 근로기준법미만의 경우는 2%(3%)로 나타났으며, 지급하지 않는다는 답변도 9%(7%)에 이르고 있음.

<표 39> 재해 발생의 장애보상

	사용주답변		근로자답변	
	빈도수	비율	빈도수	비율
지급하지 않는다	150	9.4	96	6.9
근로기준법상의 기준 미만	38	2.4	45	3.3
근로기준법상의 기준 이상	208	13.0	90	6.5
형편에 따라(잘 모르겠다)	1,207	75.3	1,152	83.3
합 계	1,603	100.0	1,383	100.0

9. 재해발생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보상은 어떻게((재해 발생이 없는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 재해발생기간중의 임금지급에 대하여 4인이하 사업장 전체 사업주(근로자)의 78%(88%)는 형편에 따라(잘 모른다)라는 답을 하였고, 근로기준법이상을 지급하는 경우는 11%(5%), 근로기준법미만의 경우는 2%(2%)로 나타났으며, 지급하지 않는다는 답변도 9%(5%)에 이르고 있음.

<표 40> 재해 발생의 경우 유족보상

	사용주답변		근로자답변	
	빈도수	비율	빈도수	비율
지급하지 않는다	144	9.1	70	5.1
근로기준법상의 기준* 미만	29	1.8	29	2.1
근로기준법상의 기준 이상	172	10.9	65	4.7
형편에 따라(잘 모르겠다)	1,238	78.2	1,206	88.0
합 계	1,583	100.0	1,370	100.0

주*) 평균임금의 1,000일분

III. 정 책 방 향

1. 근로기준법이나 산재보상보험법 등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 근로기준법이나 산재보험법의 지식 정도에 대하여 사업주(근로자)의 3%(51%)가 많이 알고 있다고 답변을 하였고, 58%(47%)는 약간 알고 있다, 전혀 모른다는 사업주가 39%, 근로자가 2%로 법률에 대한 지식은 사업주보다는 근로자가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4인이하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확대 적용될 시에 사업주에 대한 홍보가 절실함을 보여주고 있음.

<표 41> 근로기준법 등에 대한 지식

	사업주답변		근로자답변	
	빈도수	비율	빈도수	비율
많이 알고 있다	56	3.4	871	51.4
약간 알고 있다	961	57.6	796	47.0
전혀 모른다	651	39.0	27	1.6
합 계	1,668	100.0	1,694	100.0

2. 귀하는 사업주로 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는가(근로자답변)?

- 사업주로 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4인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93%는 있다고 답을 했으며, 7%만이 없다는 답변을 하였음.

<표 42> 사업주로 부터의 부당한 대우 유무(근로자답변)

	빈도수	비율
있다	120	7.1
없다	1,564	92.9
합계	1,684	100.0

3. 사업주의 부당한 처우에 대한 귀하의 대응은(근로자 답변)?

- 사업주로 부터 부당한 처우에 대한 근로자의 대응은 근로자의 60%가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았다고 답변하고 있으며, 노동부나 노동단체의 도움을 받은 경우는 3.4%, 법원에 소송을 한 경우 1.7%로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적으로 또는 동료와 항의한 경우는 35%로 나타남.

<표 43> 부당한 처우에 대한 대응(근로자 답변)

	빈도	비율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았다	214	59.8
개인적으로 또는 동료와 함께 항의하였다	126	35.2
노동부에 신고하거나 노동단체 등에 고발하였다	12	3.4
법원에 소송을 내었다	6	1.7
합 계	358	100

4. 귀하의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면 어떤 것이 가장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어느 것 부터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 하십니까)?

- 근로기준법이 4인이하 사업장에 확대되는 경우 사업주는 퇴직금을 가장 부담스럽게 느끼고 있으며(17%), 휴일 및 휴가, 근로시간과 휴게, 해고의 제한, 임금체불, 재해보상, 여성 및 연소자보호, 산업안전 순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근로자의 경우 4인이하 사업장에 확대되어야 할 근로기준법에 대하여, 퇴직금 제도, 임금체불의 방지, 휴일 및 휴가, 근로시간과 휴게, 해고의 제한, 여성 및 연소자 보호, 재해보상, 산업안전 순으로 중요도를 표시하고 있음.
- 주요한 항목에 -특히 퇴직금- 대하여 사업주의 부담과 근로자의 요구가 엇갈리고 있음.

<표 44> 근로기준법의 확대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과 근로자의 요구

	사업주		근로자	
	비율	순위	비율	순위
임금체불방지	11.2	5	15.6	2
퇴직금	17.1	1	17.3	1
해고의 제한	13.1	4	12.4	5
휴일·휴가	14.3	2	15.2	3
근로시간과 휴게	13.7	3	13.6	4
여성보호 및 연소자보호	9.5	7	8.8	6
산업안전	9.2	8	7.1	8
재해보상	10.4	6	8.6	7
기타	1.6	9	1.5	9
합 계	100.0		100.0	

주) 가중평균치임. 즉 중요도에 따라 9점 부터 1점을 가중치로 두어 계산.